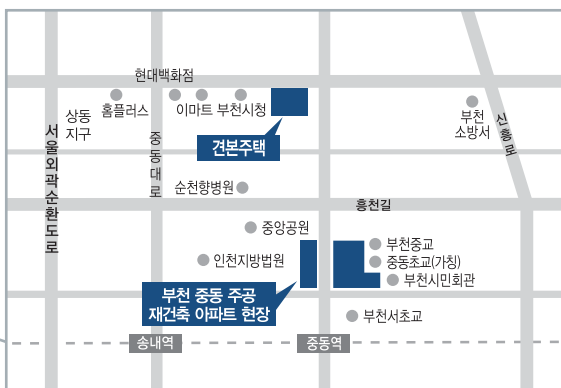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 문의전화 032)656-3090

- 연면적 : 448,015.60㎡ ■ 용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자금관리 : 시행·시공사 공동관리
- 대지위치 :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 외 3필지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 : 부천 중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

시공 :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당신의 가치가 될 부천의 새로운 랜드마크 -

# 부천 중동 주공 재건축 아파트

| 분양안내 |

# 부천 중동 주공 재건축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당 아파트는 2007.9.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민영주택으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간접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은 원칙으로 하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청약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 안심하고 분양 받으셔도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도시균형개발과 1228호 (2008.04.18)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883번지외 3필지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8 ~ 30층 29개동 3,090세대 중 412세대(부천 중동 주공 재건축 아파트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특별공급 80.8443㎡ 25세대, 111.2010(A)㎡ 9세대, 111.4620(B)㎡ 6세대, 114.6266㎡ 1세대 총 41세대 및 무주택 3자녀특별공급 80.8443㎡ 7세대, 111.2010(A)㎡ 3세대, 111.4620(B)㎡ 2세대 총 12세대 포함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도별번호)	주택면적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비	공급 세대수	구분	허용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일)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중도금		
				전용면적	주거용	소계													계약시	08.7.24	08.10.24
민영주택	21896-01	200800042(01)	80.8443	599738	20.8645	80.8443	10.916	21.7409	1036668	3.6436	248	기준층 (3층~최상층)	16	103동	20,4348	101,152	30,5500	30,550	61,100	61,100	152,750
													214	104동 105동 111동 116동 117동 120동 125동	20,2342	100,158	30,2500	30,250	60,500	60,500	151,250
													1	103동	197,659	97,841	29,5500	29,550	59,100	59,100	147,750
													7	104동 105동 120동 125동	195,987	97,013	29,3000	29,300	58,600	58,600	146,500
													1	103동	198,322	97,178	29,3500	29,350	58,700	58,700	147,750
													9	104동 105동 111동 116동 120동 125동	194,315	98,185	29,0500	29,050	58,100	58,100	146,250
	21896-02	200800042(02)	111.2010 (A)	849880	262128	111.2018	15.488	30.8060	1435545	435259	8'	기준층 (3층~최상층)	31	101동 4호 110동 115동, 118동 125동, 123동 4호 5호	310,603	140,337	451,000	45,100	90,200	90,200	225,500
													20	107동 118동 124동 2호, 125동 1호, 2호, 126동 2호 127동 1호, 2호, 128동 2호	30,7504	138,996	44,6500	44,650	89,300	89,300	223,250
													1	103동 4호	301,306	136,194	43,7500	43,750	87,500	87,500	218,750
													21	101동 4호 5호 110동, 115동 118동 119동 4호 5호 125동, 125동 5호	298,207	134,739	43,3000	43,300	86,600	86,600	216,500
													14	107동 1호 4호 119동 124동 1호 2호 125동 1호 2호 126동 1호 2호 128동 1호 2호	295,107	133,339	42,8500	42,850	85,700	85,700	214,250
													21	101동 3호 109동 3호 112동 3호 114동 3호 119동 3호 123동 3호 124동 5호 125동 5호 126동 5호, 127동 5호 128동 5호	312,543	138,457	45,1000	45,100	90,200	90,200	225,500
21896-03	200800042(03)	111.4620 (B)	849880	264736	111.4626	15.488	30.8060	1438553	436280	63	기준층 (3층~최상층)	18	101동 1호 109동 1호 112동 1호, 114동 1호 124동 3호, 127동 3호 128동 3호	309,424	137,076	44,6500	44,650	89,300	89,300	223,250	
												1	112동 1호	300,089	132,931	43,3000	43,300	86,600	86,600	216,500	
												12	101동 3호 109동 3호 112동 3호 114동 3호 119동 3호 123동 3호 124동 5호 125동 5호 126동 5호 127동 5호 128동 5호	300,089	132,931	43,3000	43,300	86,600	86,600	216,500	
												11	107동 1호 109동 1호 112동 1호, 114동 1호 119동 1호 123동 1호 124동 3호 125동 3호 126동 3호 127동 3호 128동 3호	296,950	131,560	42,8500	42,850	85,700	85,700	214,250	
												12	101동 3호 109동 3호 112동 3호 114동 3호 119동 3호 123동 3호 124동 5호 125동 5호 126동 5호 127동 5호 128동 5호	297,928	142,072	43,0000	43,000	86,000	86,000	215,000	
												2	101동 1호, 2호	32,9511	180,489	510,000	510,000	102,000	102,000	255,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시공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주택법 시행령 제42조의 3의거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사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가 미포함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가구입선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형 금액이며, 기본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주방을 선택한 전수입으로 꾸미는 것으로 판매하지 않음.
- 주택형별 표기된 작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표기하였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건축공급이 80% 이상 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중도금의 1/4 이하 환수는 사업주체가 정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6조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입주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비 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비 적확성이 면적중 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비 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결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라인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에 접수받아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결과에 따라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소수점으로 등기 면적이 생략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퇴임일 또는 공영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밀포티가 있는 동은 밀포티를 일반용 층고인 층을 1개 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고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 격을 산정하였음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2003.6.7부터 시행)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은 주택투자지역(2006.1.22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중부채 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정책을 제한하여 적용됨.
-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인등)만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 및 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가점을 우회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대상 자격이 불합격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분 (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계약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특별공급세대
- (단위 : ㎡)

주택형 (㎡)	80.8443	111.2010(A)	111.4620(B)	114.6266	계
세대수	25	9	6	1	41

- 특별공급 세대 : 전용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4세대
- 접수일시 및 장소 : 2008.04.27(일요일) 00:00 ~ 14:00 / 당시 건설주택
- 동 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04.27(일요일) 14:00 / 당시 건설주택개발자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급하지 않습니다. 양자합치기 바람
- 계약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 특별공급 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24) 현재 무주택세대주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 본 가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중 1통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인감증명서 1통(주택공급신청용)
  - 인감도장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등
  - 중도청약 및 당첨시 차관기준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부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처리함
  - 특별공급 신청 마일시 전야를 양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2)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24) 현재 수도권소재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20세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생계유지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되는 세대주로 간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에서 특별공급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가 율통계청 통계정보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따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40%와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를 각각 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과거 특별공급을 당첨 사실이 있는 자의 본인(가) 신청해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기간 내에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만립상 미성년자(20세 미만)인 자 한
  - 자녀수에는 입양자도 포함됨. 단, 입양증에 있는 태어는 포함에서 제외됨.
  - 입주자 선정방법 : 3자녀특별공급 배정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세대
- (단위 : ㎡)

구분	80.8443	111.2010(A)	111.4620(B)	계
경기도	4	2	1	7
서울특별시	2	1	1	4
인천광역시	1	-	-	1
계	7	3	2	12

-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대상자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24)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 본 가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특별공급신청서(당시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 도 거주기간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번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이 인정할 고자 하는 지역 거주기간되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 및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무주택사실(접수장소에 비치)
- 배정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 신분증 및 도장

\*본인 및 배우자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에게 -준비서류 포함)로 간주하여 제3차 대리 신청시 구비사항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영도주택공급신청 우임종)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1통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있으나 세대주 기간 신청,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상가 지등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여 한하며, 상가 귀사청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우주택 3차부터 특별공급신청자는 일반공급신청이 불가하며, 특별공급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일반공급 : 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내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정기준		해당 사항	비고
			기 준	점수		
계		100				
채녀수 (1)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이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명 이상	10		
			1명	5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 (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신청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 (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주)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 검색으로 확인 (4):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3)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04.24) 현재 부천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 적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부천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 미만 거주하는 수도권 거주자 지역으로 청약 가능

- 상가 주택은 청약가 점제 적용 이따르서서 총공급세대주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가정제 75%, 추첨제 25%, 85㎡ 초과 가정제 50%, 추첨제 50%로 공급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체에 대하여 1인 1인 신청 가능하며, 2인 이상 신청시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경기도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예치금액으로 변경(지역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

- 분양가상한제 주택 가점첨자 또는 가점첨자가 된 자의 세대내 속한 자는 가점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 1년 이상 청약 가능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한 연 예종은 정은 계약제 결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상가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4)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순위	구분	신청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청약접수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특별공급 (3차 이상 포함)	전주택형	· 위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2008.04.27 (일요일)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발표일시 : 2008년 04월 27일(일) 14:00 -발표소 : 당사 견본주택	
1순위	공동	가점제대상자	부천시/ 수도권	2008.04.29 (화요일)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 이외의 은행 www.ap2you.com	- 발표일시 : 2008.05.09(금)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 당첨자 명단은 상가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 화문 외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입지하시기 바랍니다)	
		추첨제대상자					
	전주택형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808.29 이전 국민은행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 이전 국민주택 청약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분(85㎡ 초과 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 경과된 납입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참조)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청약신청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및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이사항 참조) - 2002.9.5 이후 청약관련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단 1주택 소유로 인한 1순위 추첨제 대상자가 임의로 2순위 청약 불가)							
2순위	공동	가점제대상자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2008.04.30 (수요일)	우리는행 분, 지점 - 시간 : 09:30~16:30		
		추첨제대상자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전용면적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액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순위자 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분 단, 1주택 소유로 인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는 2순위 청약 불가)				
3순위	전주택형	· 상가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05.02 (금요일)	우리는행 분, 지점 - 시간 : 09:30~16:30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 가점제 등 청약가 점제 확인(접수하지 않고 신청자 개시사항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므로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가 점제를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가 점제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능함. (노약자, 장애우 청약신청 가능 시간 : 09:30~16:30 단, 청약통장가입은 행에서 가능)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 하단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1)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2)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① 청약예금 청약부금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환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② 948.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②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③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인터넷, KB모바일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구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 중 변경계획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액이 있으신 분	
	KB모바일	▶ 국민은행 Mbank, kbank, Bank on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WIFI폰 기종만 가능)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권 → 사이버 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 주택 청약 → PIN 입력 → 주택 청약 신청 ▶ KTF, LGT : KB뱅킹 접속 → 모바일 주택 청약 → PIN 입력 → 주택 청약 신청	-

· 노약자, 장애우 등 청구 청약지 구비서류

-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의 잔산등록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단, 주민등록상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문의 당청으로 인한 당청취소 및 부작위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 신청접수방법

- 특별공급(3자녀 이상 포함)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시 견본주택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공통 : 순위별로 접수일정을 구분하여 공표, 홍보, 열람 구분 없이 주택행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행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기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 2순위  
- 1순위 중 가점제 대상자 및 2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
- 1순위자 중 추첨제 대상자에 한해 추첨제로 청약접수
- ※ 청약자는 입주자 선정방법(가점제 추첨제) 선택이 불가하며, 청약통장 순위와 청약신청시 입력한 주택소유현황 등에 따라 자동 분류 접수됨.
- 3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순위를 초과하여 접수된 동일순위에서 부천시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세대수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수도권 거주자 신청접수 미달시에는 차순위에 공급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간단한 주택청약의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 의무 적용 시행 아파트로서 반드시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주택청약금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그러므로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거주지역, 거주개사일, 주택소유여부 등)를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별, 자격별 청약접수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개별방법
- 거주개사일: 주민등록 등·초본 등으로 확인한 주택청약신청서(구, 단위) 전입일을 기재
- 청약신청시 청약자격 및 청약가점초기제 등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당일 마감시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 취소 또는 취소 후 재신청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후에는 변경이 불가능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급신청시 구비사항(은행청구 청약자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인명 주택	본인 (배우자 포함신청시)	· 주택청약 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 2 순위에 한함) · 예금인장(1, 2 순위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 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제출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 (직계 존,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등·초본 : 주택청약금 신청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영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증명(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서는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비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청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청자로 해당되므로 관련 증명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금액	신청금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청약시 :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은행 잔고를 유지해야 함. · 은행 방문 청약시 : 가능한 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소재 금융기관 발행 지가없수표(가능한 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청약자 발표 의정일(2008.08.5) 이후(평일 09:30~16:3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 (단, 청약자 본인의 우리은행지점에서는 이제 신청한 분은 청약자 발표 의정일일에 자동이체함)
- 환불시 구비서류 : 주택청약금신청 접수증 및 은행(증명)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사본(서명)으로 신청한 자, 환불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서류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위임) 1통 ·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영인증서)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인감증명서(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위임시는 제출 생략)
- 3순위 청약신청금(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음.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순위 당청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음.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하여야 함
- 3순위 청약자의 신청금에 대해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등·호수 결정

구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3자녀 포함)	· 당사 견본주택에서 신청자 입회하여 공개추첨에 의해 등·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이 미달된 경우에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통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원연속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원연속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정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 후,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 단, 1순위 중 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원연속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전원연속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 주택건설지역 1년 이상 거주신청자가 수도권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고, 수도권 지역 거주자 신청(부천시 주택건설지역 1년 미만 거주신청자 포함)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청약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방식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제 참가자를 포함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방식으로 등·호수를 배정함.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청확인서비스 이용방법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청여부는 발효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권 → 사이버 청약지점 → 당청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에 접속 → 당청사실조회
	이용기간 ▶ 2008.5.9~2008.5.18(10일)	▶ 2008.5.9~2008.5.18(10일)
ARS	이용방법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 701]	▶ 1368(서비스코드 5#)
	이용기간 ▶ 2008.5.9~2008.5.18(10일)	
KB모바일	이용방법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 주택 청약 → PIN 입력 → 당청확인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 주택 청약 → PIN 입력 → 당청확인	
	이용기간 ▶ 2008.5.9~2008.5.18(10일)	
휴대문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청자	
	제공일시 ▶ 2008.5.9 09:3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장소

- 계약기간 : 청약 당청자 2008.05.14(수)~2008.05.16(금) 3일간(시간 : 0:00~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안도 및 전호(본초점)
- 특별공급 우주택 3자녀 특별공급(1순위)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청시 실유무 전산검색소요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과 공급자적되는 선정순위에 따라 계약(정당당청)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 계약체결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정시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는 당청 효력 상실됨.
- ※ 청약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일괄 분양함.
-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 입주자에 대한 용자지원 내용

- 지정 금융기관에서 각 주택청약비 40%까지 용자 지원(기안별 금융기관 신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라도 변동 될 수 있음)
-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이며, 금융 신용관리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보증금 대출 불가/지급은 납부 조건에 따라 직접 납부 하여야 함.
- 용자 은행은 우리은행 부천시점임 (우리은행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법

대금구분	예금주	계좌번호	금융기관
계약금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외 3인	1006-201-284045	우리은행
중도금 및 잔금	부천중동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외 3인	1006-601-284067	우리은행

- 중도금 전입 수납계좌로 타행송금은 불가하며 우리는 행보. 지정예산입금 가능하며, 무통장인입시 등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요망
- 지정된 중도금,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계약시 구비사항
공통	· 주택공급 신청 접수(영수증), 인터넷, KTB모바일 청약신청 당락자는 제출생략) ·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초)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제에 한함) - 가족명세서(배우자,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 건축물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가액상당등본 포함) - 무허가건축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청 처가 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 3 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붙어있고 있는 위임장(계약소에 비치)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 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로 발급하도 용도를 직접 기재용도 : 아파트 계약용하여 제출하시기바람. (보통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인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함)

■ 계약조건 등

- 사업주체에서 당락자에 대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락되어 부적격당락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당락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락자로 전환(반 리턴)
- 계약체결후이라도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 당락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락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기정환(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1순위 가점제 당락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1순위 당락자 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201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락자 중 최초 입주로 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기 당락된 자 또는 기 당락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당락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당락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락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청약사실 유무판단시 당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 이혼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락사실 포함함
- 동일세대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2인 계약체결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락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락이 되면 본 주택의 당락을 취소할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락된 경우에 한함)
- 당락된 청약관련예금통장은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
- 해당 청약자 중 최초 등 호수 배정후 함께 참가하여 당락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후 부의 관계없이 당락된 자로 관리됨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락 제한 등이 적용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거나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계약된 계약은 취소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락된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락자로 전환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성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합행위로 처벌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락 취소 및 고발 조처함.
- 주민등록번호 위변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서는 이미 행하여진 당락을 취소하고 입주자 저축통장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을 취소하고 당락자로 관리됨.
- 아파트 배부구조 및 등 호수 배열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생활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락된 자로서 재당락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 기타 계약조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2에 준함
- 각종 인센티브 및 홍보물상의 조건과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나,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사용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 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계약기간내 계약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예정일 및 관련절차

- 입주예정일 : 2008년 12월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더래 중도금 과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잔납 할인은 적용되지않음)
- 입주자 사전 점검 실시
- 도청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6개 공정에 대해서는 상태를 확인하기위한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비 고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축물대장등본 등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명세서(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정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감점항목			감점점수	확인할 서류 등
구분	기준	소유주택수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 건축물대장등본 등
		3호 또는 3세대	-10	
		:	: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1.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 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자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청·자기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이하) 이하) 하며, 입주자 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이 5년미만 이혼한 주택(이하 "소청·자기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세대원 1인 이상 계속 소유(소청·자기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또는 제 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청·자기주택의 주택이 5년 미만인 경우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또는 제 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7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과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혼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이하)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2.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을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이하) 이하)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또는 제 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또는 제 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하) 이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와 또는 제 2조에 따라 60세미만 이하의 주택(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3 입주자처측 기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처측 기입자의 기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처측의 종류, 금액, 기입자 명연변 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기입일순위가산일을 기준으로 기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처측 기입기간에 대한 기정점수는 청약신청서 지문부 여함

###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집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별 초과하는 주택수 마다 5점씩 감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제한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면제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 마다 5점씩 감점

### ※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건물은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적으로 소유하는 재산제 과제내 정액에 존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포함됨

3. 주택매매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 본 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공유자본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6.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민정기정주택공급제한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일(양도체 호의 제 호의 일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건축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자분을 취득한 사실이 민정등기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상 두 권에 걸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의 실익(이익)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실익(이익)에 거주한 경우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다) 다른 주택 실익(이익)에 거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질적(본질)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기전주택(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사무서에 사용자등록한 개업시업자가 그 소속공근로의 소속으로 사용하여가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전에 확신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가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신청 : 자기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제한규칙별표 제 호 기목 2)

- (현재 신청자기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기주택' 1호 또는 '세대원'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신청 : 자기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인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전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무주택자) 종전 신청 : 자기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신청 : 자기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급자격 적용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 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에 '주택공급자격'이라 함)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급가격을 처분일 이전의 가격으로 낮추어 주택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1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17년도 주택공급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 기타 유의사항

· 청약신청 이후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의 일치여 부를 반드시 대조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단말기로인자된 거주지역만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공급제한규칙 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주택) 또는 (월)란은 평면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시 (주택현(현))으로 기재하여 붙여넣어야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대선 내 필요시법정단위인 제곱 미터(㎡)로만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한선방법 : 평형 면적(㎡) × 0.3025 또는 평형면 적(㎡) ÷ 330.58)

·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공급면적(이하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상 면적(이하 면적) 인한 차이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정산 처리함

· 간분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공정(건축신고통보 주(2014.5-2015.0.5))에 의하여 접수할 수 있음 (단,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은 확립 보존)

· 각종 인센티브 및 조건은 개별적인 사항을 등기 위한 것으로 설계하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들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정결과 및 각종 평가서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당청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청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조치함

· 주민등록지(이하 신주소)로 인한 건축시행과 아파트 배후구조 및 등 용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민등록지의 비산본 진 동음용체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변 및 생활환경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이하)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평형 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부실시와 일치하여 결정되어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채색시 일부세 대는 동일한 색채가 반영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 인하여 현재와 다르게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 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관할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 간분주택의 건축을 시공부본 또는 개발로 그 기타 홍보물 상 조건 또는 시공은 당사에서 인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공시 인출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공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 조명, 향장정대 등, 인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계약시 발생되는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 중개 등)는 당청과 무관한 사항임

· 청약 및 개편된 사업부지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행건 구 주변개발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간분주택내에서 확인이 관련한 사항인 공동부분의 시설물(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차등은 사전에 확인신청서에서 첨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간분주택내에서 확인이 관련한 사항은 공동부분의 시설물(공동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차등은 사전에 확인신청서에서 첨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설계로 입주자 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실사를 어지러질 시에는 법에 따라 처분받을 권

· 청약처측에서 청약예금으로 청약예금이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입주모집공고일과 건립까지 변경한 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기타는 공동으로 사용할 . 본 아파트의 의하자 등에 따른 소변지 피해보상은 주택별 제6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시세나 면적은 청약의 차지가 있을 수 있음 (현재중간시 분양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 위내에서 경리한 설계 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각종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 인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외국법인포함)이 공동주택 분양계약 체결할 경우

- 국내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주택 구입시 외국인투자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 거주 외국인인 국내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채권을 국내에 설립 후 투자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입등록신청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해야 함

-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방식 결정, 운영비용 부담 및 운영의 주체는 입주 후 구성되는 자치위원회에 일임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신설예정인 부천중 등 초·고·중·고·대학은 입주시 명칭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당사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시행사 및 시공사)

- 시 행 자 : 부천시 원미구 상동 328-10 경원빌딩 2층 부천중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김장환
- 시 공 자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541 주식회사 대우건설(대표이사 서종욱 서울특별시 중구 수송동 146-12 대원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종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장중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원, VAT별도)

구분	회 사 명	금 액	비 고
건축	(주)우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4,424,947,110	
통신, 소방	(주)신담엔지니어링	₩170,000,000	
전기	(주)신담엔지니어링	₩320,000,000	

## ■ 연대보증자 및 분양보증내용

·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별 연대보증 내용

연대보증자	보증서 번호(용지번호)	보증금액
대한주택보증(주)	01212008-101-0003000	₩75,668,000,000

##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대상

①) 보증회사는 주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 호 기목에 따라 주택주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②) 보증대상 제외사항

- ① 전채지번, 전전, 내한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택주자가 분양계약의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② 주택주자가 대물변제 처분, 이종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③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별 분양권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④ 보증채권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계약금,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⑤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치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치통보채좌에 납부한 입주금
- ⑥ 보증채권자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⑦ 보증채권자 분양계약에서 지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⑧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
- ⑨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⑩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⑪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주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⑫ 주택주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전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제세상금
- ⑬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시공선택 품목에서 : 홀트, 발코니(시) 미니나스(스)선 부위, 기타 미간계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⑭ 보증채권자 제 조의 보증채무(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중(중)된 채무

③) 보증회사가 제 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전액입금 및 제 조 제 호 내지 제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 조 제 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예 해당하는 잔금은 그라하지 않습니다.

1. 시공을 인입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입사(승인)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액입금의 9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잔금

## ■ 부대보리시설

· 관리사무소, 견련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터, 견련실, 주민공동시설등

## ■ 견본주택 위치 및 전화번호

· 견본주택 전화번호 : 032) 696-3090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55번지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및 본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천 중동 주공 재건축 아파트 동·호수 배치도

## ■ 주택형별 세대수

구분	80㎡	111A㎡	111B㎡	총계
총세대수	820세대	1,054세대	549세대	총세대수 3,090세대
일반분양	248세대	87세대	63세대	
구분	114㎡	130㎡	162㎡	일반분양세대수 412세대
총세대수	277세대	220세대	170세대	
일반분양	12세대	2세대	-	

